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53

발의연월일: 2023. 3. 7.

발 의 자:정일영·이성만·김주영

박성준 · 정성호 · 김병기

홍기원 · 한준호 · 장경태

박재호 · 조오섭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 자산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산투자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고령화·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기존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이하"를 "기술(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 분야의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이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시설"을 각각 "토지 및 시설"로, "이하"를 "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 관련 시설의 경우 기술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	
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	
나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안	2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 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1. (생략)

기술(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 분야의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u> 포함하며, 이하</u>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1. (현행과 같음)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u>시설</u>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u>시설(이하</u>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 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2
가
<u>.</u>
1) (현행과 같음)
2)
<u>토지 및 시설</u>
<u>토</u>
지 및 시설-백신, 바이오, 반
도체, 배터리 산업 관련 시
설의 경우 기술의 사업화에
설의 경우 기술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나. (생 략)나. (현행과 같음)② ~ ⑤ (생 략)② ~ ⑤ (현행과 같음)